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의 근거 신설 등〉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19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률의 목적 변경	3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삼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	13
4. 인삼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8
5.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에 관한 사항 추가	23
※ 참고자료	32
[참고1] GAP 인증 및 관리 절차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명선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또한 인삼 생산자의 농산물우수관리(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나.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신설).
- 다.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률의 목적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동 법의 목적에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며,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u>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며,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u> -----.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하고(제8조), 인삼류제조자 등은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을 받도록 하며(제17조), 미검사품의 거래를 제한(제19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고, 인삼 산업의 위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삼 산업 현황>

연도(년)	재배농가 수	재배면적	생산량
2011년	23,578호	17,601ha	26,737톤
2021년	19,044호	14,729ha	20,772톤

※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인삼 의무자조금 운용평가 용역, 2023.9.

이에 개정안은 동 법의 목적에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①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②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며, ③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을 국가 중요품목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문장이 복잡하여 의미전달이 어렵고, ‘국가전략산업’이라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여 개정안이 선언적 문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의미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수정 및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삼생산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생산량 23,265톤, 생산액 8,307억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생산량 22,020톤, 생산액 7,71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여 전체 인삼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삼생산 현황>

연도(년)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량(톤)	23,265	19,582	23,896	20,772	22,020
생산액(백만원)	830,672	702,874	819,088	704,364	770,96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인삼 통계자료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1조는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인삼산업의 육성·지원 또는 생산자의 소득안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촉진(제20조의2¹⁾),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제20조의 4²⁾)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규제 위주의 규율로 인해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고, 인삼 산업의 위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목적 규정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①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②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며, ③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사항을 규정할 경우,

인삼산업의 육성·지원³⁾과 생산자의 소득안정 등에 대하여 강조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목적규정의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렬적으로

- 1) 「인삼산업법」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인삼산업법」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현행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인삼산업법 상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제3조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제8조	인삼경작자에게 경작방법 지도 등
제20조의2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20조의3	인삼산업 관련 통계조사 실시 및 인삼자조금단체에 결과 제공

나열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u>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

현행	개정안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수출·관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u>제3조의2</u>(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u>제4조의2</u>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제3조4)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

4)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이미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제3조를 유지하고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제3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제3조제4항5), 제20조의2제1항·제2항6), 제20조의47)는 인삼산

5)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인삼산업법」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와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인삼산업법」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발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삼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에 필요한 조치⁸⁾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재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인삼산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인삼산업 규모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배면적(ha)	15,452	14,770	15,160	14,729	14,734
재배농가수(호)	20,556	16,981	17,707	19,044	18,236
생산액(백만원)	830,672	702,874	819,088	704,364	770,96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인삼 통계자료집

8)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예시로 수매 비축,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농가 인삼재배 현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가격안정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은 기호식품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지자체의 수급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시장질서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인 인삼농협 등을 통해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⁹⁾에 따르면 인삼은 ① 수삼, ② 홍삼, ③ 태극삼, ④ 백삼, ⑤ 그 밖의 인삼으로 구분되며, 이 모두를 “인

9)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삼”(水蓼)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蓼)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蓼)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蓼)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삼류”로 통칭하고 있음.

이 중 수확 후 가공되지 아니한 인삼인 수삼의 최근 5년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평균 33,514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28,972원으로 하락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수삼 가격 동향>

(기준: 750g/4년/10편 - 금산도매시장 도매가기준)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격(원)	33,514	32,154	28,056	27,132	28,97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인삼 통계자료집

인삼은 연근¹⁰⁾이 4년 이상이어야 홍삼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¹¹⁾, 대부분의 인삼은 4년근 이상에서 수확됨.

10) 「인삼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호 「건강기능식품 공전」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 기능성 원료

2-2 홍삼

1) 제조기준

(1) 원재료 : 수삼(*Panax ginseng* C.A. Meyer)을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써 익혀 말린 홍삼

(2) 제조방법

(가) 상기 (1)의 원재료를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나) 상기 (1)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물 · 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4) 제조 시 유의사항 : 원재료인 인삼근은 「인삼산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4년근 이상의 것으로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연근별 경작동향>

(단위 : ha)

연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합계
2018	3,209	3,046	3,508	3,083	2,606	15,452
2019	3,191	3,285	3,112	3,071	2,111	16,981
2020	3,474	3,256	3,363	2,886	2,181	17,707
2021	3,032	3,499	3,314	3,089	1,795	19,044
2022	2,665	3,034	3,712	3,180	2,143	18,23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인삼 통계자료집

이에 따라 인삼의 경우 재배 시작 시점으로부터 수확 시점까지의 기간이 타 작물에 비해 길어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안정 조치를 통해 인삼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격안정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가격안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안정을 위하

여 제10조¹²⁾ 계약경작, 제11조¹³⁾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을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계약경작 및 수매 비축 등의 조치로 보는 경우, 동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재량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2) 「인삼산업법」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 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3) 「인삼산업법」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방출하게 할 수 있다.

4. 인삼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삼 및 인삼류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u> <u>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6조(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삼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인삼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개정안은 각 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인삼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이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안 제5조 신설과 관련하여, 인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기관을 정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반면, 안 제6조 신설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인삼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기관¹⁴⁾ 간의 지속적인

14)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충남 인삼약초연구소, 전북 약용자원연구소, 경북 풍기인삼연구소,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등에서 인삼 관련 연구를 추진 중임

소통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개정안의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은 기존의 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옥상옥 구조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존 기관 중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 타 기관과의 형평성 시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인삼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정부, 연구기관, 농협, 민간 유관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인삼 산업 발전과 관련된 인삼의 생산·유통·검사, 수출 진흥,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인삼 관련 연구 수행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정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 인삼 신품종 육성, 약배양 및 재해저항성 마커 개발 - 하우스 직파 재배기술, 생력화를 위한 대형해가림 및 공정육묘 기술 - 인삼 연작장해 경감, 친환경 방제, 진단기술 등 개발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지자체 연구 기관	경기 소득자원연구소 (도 농업기술원 소속)	- 묘삼 공정육묘 및 새싹삼 재배기술 개발 - 인삼 재배생리 및 토양병해 진단기술 개발
	강원 인삼약초연구소 (도 농업기술원 소속)	- 인삼 친환경 미생물 방제 기술 개발 - 인삼 성분특성 및 지표성분 분석 연구
	충남 인삼약초연구소 (도 농업기술원 소속)	- 인삼 신품종 육성, 인삼 재배법 개선 및 병해충 방 제 연구 - 대형 해가림 재배기술 개발 및 가공이용 연구
	전북 약용자원연구소 (도 농업기술원 소속)	- 인삼 비가림재배 기술 개발 - 인삼 친환경 생산기술 및 병해충 방제연구
	경북 풍기인삼연구소 (도 농업기술원 소속)	-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유전분석, 인삼 가공 및 유효 성분 연구 - 하우스 다단 재배기술 개발, 토양, 재배환경 및 병 해충 방제 연구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	- 금산지역 인삼약초기업의 제품판매·홍보마케팅 지원 - 농산물안전성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 개발기술 기업이전, 인삼약초 효능연구 및 시제품 개발
	진안홍삼연구소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	- 홍삼 제품개발 등 홍삼 관련 연구 - 홍삼 관련 기술 실용화 지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과 제5조와 관련하여,

인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을 정부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담기관 지정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옥상옥 구조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에 관한 사항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표준인삼경작방법 외에 수확 후 관리기술을 추가하여 고시하도록 함. 또한 이를 고시할 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u>표준인삼경작방법</u>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 ----- ----- ----- <u>표준인삼경작방법</u> <u>과 수확 후 관리기술(이하 “표준인삼경작방법등”이라 한다)</u> ----- -----.
<신 설>	② <u>농촌진흥청장은 표준인삼경작방법등을 고시함에 있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u>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조합은 인삼경작자에게 <u>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u>	③ ----- ----- ----- ----- <u>표준인삼경작방법등</u> -----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 10.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 ----- -----. 1. 제8조제4항----- -----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이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15)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함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르면, GAP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6)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증기준은 총 51개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GAP 인증기준 : 총 12개 기준(51개 세부기준)>

항 목(12)	세부 기준		
	필수	권장	계
합 계	26	25	51
1.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 인증농산물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 - 영농행위 시작부터 출하까지 생산·출하 정보 기록(1년간 보관) -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회수조치 가능	1		1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품질표시 종자 사용	2	1	3
3. 농경지 토양 관리 -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중금속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토양병해충 방제 농약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2	3	5
4. 비료 및 양분 관리 -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 사용 - 비료의 종자종묘, 농약 등 구분 보관·관리	2	2	4
5. 물 관리 - 환경정책기본법의 생활환경기준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수질기준 적합	1	2	3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 농약관리법의 농약등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이행 - 유기농업자재 사용시 유기농업자재인증기준 적합 제품 사용 - 수확 또는 저장중인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허용기준 이내 관리	7	5	12
7. 수확작업 및 보관 - 개인 위생관리 주의 및 전염병 증상자의 작업 제한 - 수확 후 생장제, 훈증제 등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3	3	6
8. 수확 후 관리시설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수확한 농산물 관리 -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시설의 관리기준 충족 - 약용작물의 호흡열, 통풍불량 등 품위 손상 방지	4	2	6
9. 환경오염방지 및 농업생태계 보전 - 농장발생 환경오염 물질의 오염 방지 - 농장 및 농장 주변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시 오염원 기록 관리	2	4	6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농작업시 보호장구 착용 등 농작업자 보호	1	2	3
11. 교육 - GAP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2년에 1회 2시간	1		1
12. 내부심사제 -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2년에 1회 이상 시행		1	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인삼류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삼 생산자의 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GAP 기준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2022년 기준 GAP 인증을 받은 인삼농가는 전체 인삼농가의 5.1%에 불과하여 현 시점에서 표준인삼경작방법으로 GAP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농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만, 농가의 자발적인 GAP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외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주요의견	비고
한국 인삼협회	○ 인삼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GAP 기준 필요성 공감 ○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작한 경우 GAP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필요	자조금단체 (생산자 + 자체검사업체)
KGC 인삼공사	○ 농가의 GAP 관리는 선택권이 필요하므로 반대 - 인삼 소비패턴 변화(수삼→제품)로 실효성 낮음 - 계약재배 구매처의 기준과 GAP 기준이 달라 농가의 이중 관리 부담 우려	산업체 (산업체 중 최대 규모)
농촌 진흥청	○ GAP는 농가의 선택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고시에 포함시킬 경우, GAP 인증을 원하지 않는 농가까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므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됨	표준인삼경작 방법 관리· 운영기관

다. 검토의견

현재 GAP 인증 품목은 ‘2016년 7월 171개 품목¹⁷⁾에서 ‘24년 7월 314개 품목¹⁸⁾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증 농가 수 및 재배면적 등도 매년 확대되고 있음.

17) 2016년 7월 기준 GAP인증 품목 171개는 다음과 같음

쌀, 대추, 표고버섯, 천궁, 곱향, 석창포, 숙주나물, 사과, 콩, 녹차잎, 소엽(일반), 방울양배추, 약용작물류(기타), 시호, 배, 감, 지황, 단호박,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엄나무, 식용허브, 포도, 참다래(키위), 만감, 대파, 양상추, 영지버섯, 적양무, 복숭아, 매실, 작약, 양송이, 유채, 오가피, 쥐꼬리망초, 딸기, 방울토마토, 마, 한라봉, 호두, 우슬, 영굴, 단감, 울무, 옥수수, 메밀, 개똥쑥, 인진쑥(일반), 세토까, 밤, 백출, 황정, 취나물, 곤드레나물, 잎새, 밀, 수박, 호박, 썬채류, 가지, 백작약, 참나물, 천년초(일반), 감귤, 자두, 홍고추, 머위대, 생강, 치커리, 개복숭아(일반), 참쌀, 황기, 오디, 블랙초크베리, 아욱, 콩나물, 구지뽕(일반), 참외, 당귀, 도라지, 애호박, 어성초, 패션푸룻, 쑥, 보리쌀, 블루베리, 양배추, 코라비(순무양배추), 청경채, 하수오, 귀리, 감자, 마늘, 무청, 팽이버섯, 헛개나무, 감국, 블랙커런트, 토마토, 백수오, 돼지감자, 고구마순, 고본, 꽃송이버섯, 아로니아, 메론, 오이, 구기자, 느타리버섯, 고사리, 노루궁뎅이버섯, 장뇌, 무, 부추, 열갈이배추, 비가림감귤, 머루, 대게, 초석장, 풋고추, 유자, 연근, 피망, 버섯류(기타), 대왕버섯, 더덕, 인삼, 상추, 신선초, 산수유, 복분자, 동충하초, 블랙베리, 파프리카, 꽃감, 체리, 양채류(기타), 비름, 들깨, 비트(붉은사탕무우), 오미자, 건고추, 새송이, 여주, 산딸기, 만가닥, 특용작물류(기타), 미나리, 감초, 당근, 쪽파, 산자나무열매, 목이버섯, 찰쌀보리쌀, 갯, 엽경채류(기타), 파세리(향미나리), 살구, 묘삼, 고구마, 갯잎, 배추, 하우스감귤, 삼백초, 배암차즈기, 양파, 무화과, 시금치, 강활, 새싹, 백년초

18) 2024년 7월 기준 GAP인증 품목 314개는 다음과 같음

쌀, 꽃감, 강활, 새싹, 메밀순, 아스파라가스, 죽엽, 사과, 보리쌀, 하수오, 오가피, 참송이버섯, 호프, 눈개승마, 배, 생강, 비가림감귤, 근대, 퀴노아, 비타민, 단삼, 포도, 밀, 금취나물, 엄나무, 황금향, 아워버섯, 포포, 복숭아,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여주, 머루, 히카마, 메리골드차, 대마씨, 감귤, 무화과, 가지, 돼지감자, 독활, 로메인, 완두, 단감, 감초, 블랙베리, 비트(붉은사탕무우), 오이고추, 송이버섯, 겨자채, 딸기, 홍고추, 당근, 개복숭아(일반), 작두콩, 수수, 모과, 토마토, 표고버섯, 영지버섯, 목이버섯, 우영, 토란, 천년초, 수박, 마늘, 하우스감귤, 노루궁뎅이버섯, 보리순, 조미채소류(기타), 가자, 인삼, 고사리, 멸꼴, 감국, 땅콩, 백복령, 귀리순, 참외, 만감, 살구, 묘삼, 아마란스, 돗나물, 초피, 밤, 작약, 고구마순, 초석장, 열무, 레몬, 부지깽이, 오미자, 연근, 산마늘, 블랙커런트, 울금, 커피, 하스카프(일반), 감자, 천궁, 머위대, 숙주나물, 고추잎, 산초, 참쌀, 취나물, 복분자, 꽃송이버섯, 구와바, 썬바귀, 양파, 마, 우슬, 동충하초, 수국, 썬추, 풋고추, 양상추, 산수유, 시호, 꾸지뽕나무, 루꼴라, 감, 지황, 파세리(향미나리), 배암차즈기, 원지, 산채류(기타), 무, 피망, 옥수수, 식용허브, 기장, 송화버섯, 오이, 블랙초크베리(아로니아), 유채, 상황버섯, 쑥갓, 엘더베리, 콩, 새송이버섯, 방울양배추(스프로스), 어성초, 음나무순, 연잎, 파프리카, 산딸기, 호두, 적양무, 건고사리, 어린잎채소, 고구마, 플럼코트, 천혜향, 쥐꼬리망초, 아로니아, 호박순, 녹차잎, 양채류(기타), 참죽나무순, 무순, 국화차(꽃), 호박잎, 메론, 양배추, 장뇌, 쑥, 백향과, 고수, 찰쌀보리쌀, 쪽파, 청경채, 새싹삼, 뽕잎, 비파, 미나리, 곤드레나물, 아욱, 선인장, 강황, 조, 자두, 시금치, 소엽(일반), 애느타리버섯, 잔대, 천마, 방울토마토, 들깨, 만가닥버섯, 망고, 고추, 목향, 황기, 썬채류, 곱향, 참당귀, 모링가, 방아, 울무, 팽이버섯, 레드향, 백년초, 방풍, 청견, 대추, 황정, 버섯류(기타), 일천궁, 산약, 스테비아, 배추, 참깨, 백작약, 일당귀, 자소엽(차조기), 상채, 매실, 무청, 콩나물, 비름, 건우청, 솔잎, 참다래(키위), 엽경채류(기타), 치커리, 삼백초, 벌개미취, 공심채, 백출, 주키니호박, 황금, 석창포, 바나나, 곤달비, 블루베리, 구기자, 패션푸룻, 인진쑥(일반), 파파야, 두충, 호박, 체리, 달래, 대게, 해송이버섯, 차요테, 상추, 한라봉, 헛개나무, 영굴, 은행, 잡곡류(기타), 부추, 도라지, 잎새버섯, 대왕버섯, 황칠, 맥문동, 갯잎, 귀리, 약용작물류(기타), 개똥쑥, 두릅, 건강, 오디, 신선초, 참나물, 특용작물류(기타), 목련(꽃), 산사자, 당귀, 열갈이배추, 고본, 고추냉이, 라벤다잎, 대마, 애호박, 양송이버섯, 산자나무열매, 돌산갯, 셀러리(향미나리), 삼주, 대파, 석류, 구지뽕, 새싹땅콩, 케일, 세발나물, 갯, 더덕, 천년초(일반), 복령, 체리자두, 홍화씨, 유자, 단호박, 콜라비(순무양배추), 강낭콩, 다래, 아이스플랜트, 건고추, 메밀, 깻마늘, 파리고추, 방풍나물, 사삼, 백수오, 느타리버섯, 와송, 당귀잎, 새싹보리, 실파

<GAP 인증 현황>

연도	인증품목 (품목)	인증기관 (개)	관리시설 (개)	인증건수 (건)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2022	306	59	1,001	11,888	121,395	132,884
2021	298	60	956	11,278	119,824	132,324
2020	283	63	890	10,362	114,264	126,986
2019	266	62	817	9,102	99,050	112,106
2018	241	55	805	7,782	86,789	101,815
2017	223	52	799	6,909	86,091	103,270
2016	174	46	802	6,059	74,973	88,859
2015	153	44	717	4,019	53,583	65,410
2014	136	44	681	2,689	46,323	58,763
2013	129	48	756	2,499	46,000	58,703
2012	110	51	718	1,969	40,215	55,215
2011	89	49	606	1,756	37,146	49,548
2010	86	45	565	1,459	34,421	46,701
2009	59	43	484	1,233	28,562	40,081
2008	59	39	417	1,053	25,158	37,129
2007	50	31	316	364	16,796	24,754
2006	45	21	190	220	3,659	1,373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개정안과 같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 인삼의 재배환경/작물 보호/농약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를 통하여 인삼의 안전성 및 인삼 생산자의 GAP 인식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준인삼경작방법과 GAP 기준 비교>

구분	표준인삼경작방법 (고품질 인삼 생산)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유통	-	○ 대상 농산물을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농경지 토양 관리	○ 토양이 저위생산지, 화학성분이 부족·과다 시 예정지를 다시 선정 또는 관리기간 연장, 토양개량 대책을 수립 ○ 침수 우려지역, 광산 인근지역, 생활하수 유입지역 등은 인삼 재배에 부적합하므로 예정지 선정 시 제외	○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그 사용 내역 기록관리
비료 및 양분 관리	○ 질소·인산·칼륨 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생산되는 비료 사용 불가	○ 시중 비료를 사용 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 부산물비료 등 자가 생산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규정된 원료로 제조
물 관리	-	○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 인삼재배시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은「농약관리법」제8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 유기농업자재 사용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상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된 제품 사용 ○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은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관리 ○ 농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살포 후 장비 내외부에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 ○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위해 요소 관리	-	○ 수확/저장 중 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
수확 작업 및 보관	○ 해가림 철거, 인삼 줄기를 베어낸 다음 상면의 부초 제거,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확	○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 채굴한 수삼은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진 곳으로 옮겨 흠을 털어 건전삼과 병해충 피해삼, 그리고 크기 등으로 구분하여, 채굴 현장에서 종이 상자 등에 넣어 포장	○ 수확한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함 ○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 시 기준 충족 필요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	○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농경지나 농업용수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농작업자 건강, 안전, 복지	-	○ 위해요소 파악하고, 해당 위해요소 사전 제어 조치를 마련
교육	-	○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이수 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다만, 2022년 기준 GAP 인증을 받은 인삼농가는 전체 인삼농가의 5.1%에 불과함.

<GAP 인증 받은 인삼농가 비율>

재배농가수(A)	인증농가수(B)	비율(B/A)
18,236호	929호	5.1%

※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인삼 통계자료집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현행법 제10조19)에 따른 계약경작의 경우 계약업체는 표준인삼경작 방법에 기초한 별도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따라야 함. GAP 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인삼재배농가 중 32.3%에 달하는 계약농가는 두 가지 기준을 이중으로 따라야하는 결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최근 5년간 경작 종류별 인삼 생산량 현황>

(단위: 톤,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약경작	9,187 (39.5)	7,974 (40.7)	7,167 (29.9)	5,877 (28.2)	7,118 (32.3)
미계약경작	14,078	11,608	16,729	14,895	14,902
총계	23,265	19,582	23,896	20,772	22,0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인삼 통계자료집

19) 「인삼산업법」 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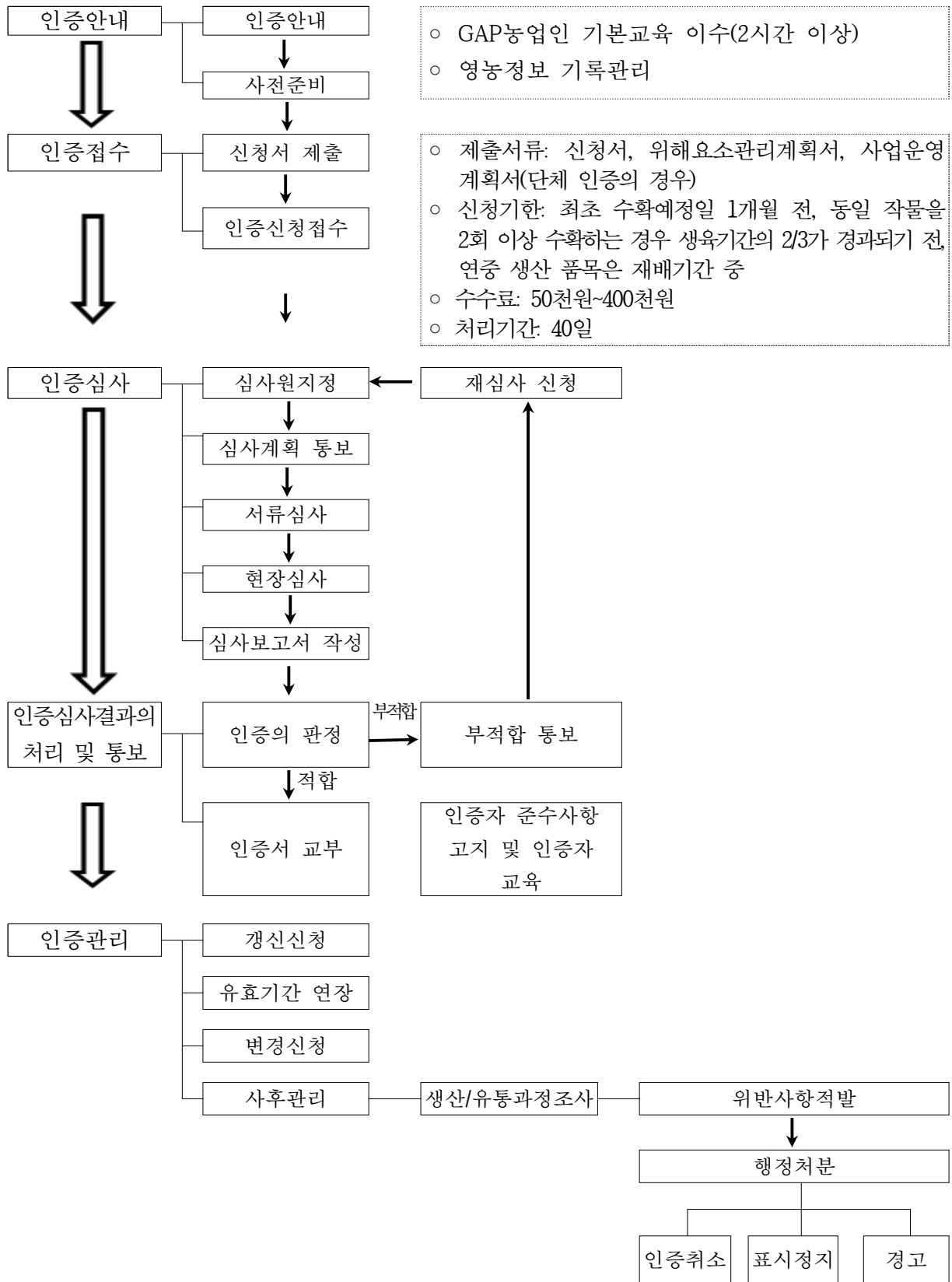
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
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GAP 인증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및 개정안 도입 시 농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1] GAP 인증 및 관리 절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